

10.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2일
- 발 의 자 : 이영애 의원, 이시복 의원, 김규학 의원, 김태원 의원, 강민구 의원, 강성환 의원, 박갑상 의원, 박우근 의원, 송영헌 의원, 이만규 의원, 임태상 의원, 장상수 의원, 전경원 의원, 하병문 의원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8일
- 상정일자 :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10월 16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영애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자랑인 국어의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마련하고,
- 시민과 공공기관의 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급속히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~제4조)
- 국어 발전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서의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국어 및 한글 사용실태 조사·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국어 교육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국어와 한글의 보전 및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, 대구의 지역어를 보전·발전시키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5조에서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‘대구시 국어 발전계획’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시 공공기관의 명칭, 정책명, 사업명, 상징, 구호 등을 「국어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고,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,

- **안 제7조**에서는 국어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어 및 한글 사용 실태 등을 조사·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**안 제8조**에서는 시 소속 직원,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
- **안 제9조**에서는 국어와 한글 보전 또는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, 시민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자 문화창조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국어와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,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
- 각종 외래어와 외국어, 신조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국어 훼손이 심각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직원과 시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최근 각종 사업명이나 시설명칭에 외래어, 신조어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,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 등 언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지역에서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으며,

- 대구시에서는 현재 공무원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지역한글학회와 대학 등에서 국어문화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질의없음			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